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6. 4.(목) 14: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이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24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최성준 위원장

- 제24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2016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15-25-140)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6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재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영규 재정팀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6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동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6일에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요를 먼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440억원으로 일반회계 408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3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기금수입은 미래부와 공동 관리하고 있어서 미래부 소관 수입을 포함한 전체금액입니다. 세출은 1,900억원으로 일반회계 51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389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조 440억원으로 '15년도 1조 2,012억원 대비 1,57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8억원으로 '15년 대비 1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통신시장 안정화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감소 및 기타 경상이전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조 32억원으로 '15년 대비 1,4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내부수입은 증가가 예상되나, 주파수할당대가 등 자체수입 및 여유자금

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세출은 1,900억원으로 '15년도 2,205억원 대비 30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1억원으로 '15년 대비 45억원 감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389억원으로 '15년 대비 26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 기본방향은 먼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요구에 따라 기재부 편성지침 및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재부 편성지침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수 10% 감축,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의 삭감 또는 폐지,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 등입니다.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제3기 방통위 주요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사업의 예산을 증액 또는 전년수준으로 반영하였고, 새롭게 소요가 제기된 사업은 사업수 총량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필수사업에 한해 기존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을 감축하였습니다.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6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감축하여 기재부 편성지침에 따른 보조사업 수 10%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개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새롭게 소요가 제기된 사업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기존사업의 내역으로 반영하여 총 3개 사업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정보사업자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활성화 기반마련 사업에 14억원,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 웹하드사업자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불법유해 정보차단 및 유통방지 기반마련 사업에 6억원, 미디어다양성 지표 측정·공표 사업에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입니다.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등 제3기 주요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증액하여 총 7개 사업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25억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10억원,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에 6억원, 방송광고 협찬 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에 5억원, 기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등 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입니다. 국회·기재부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총 17개 사업 36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사업에 143억원, 국악방송 지원 등 기타 16개 사업에 2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료사업은, KBS 재난방송 시스템지원 사업으로 금년까지 수행하고 종료되며, 25억원이 순감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예산안 요구서를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을 확정하여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업수 총량규제 때문에 필수사업을 기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반영했다고 했는데 내역사업으로 하면 어떤 유불리가 있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사실상 저희가 신규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을 반영하면서도 기재부

의 지침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 이기주 상임위원

- 형식적인….

○ 신영규 재정팀장

- 형식적이긴 하지만….

○ 이기주 상임위원

- 실제 내용은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그 내역사업을 넣어서 그런 문제점을 기재부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감액사항 중에 ‘국회·기재부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국회나 기재부에서 지적한 주요한 것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리랑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방통기금으로 경상비나 인건비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또 기재부 지적사항에는 KBS나 EBS 같은 방송사의 경우에 별도의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구조조정에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총괄표 <붙임>을 보고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반회계와 기금을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실 3국이지 않습니까? 실·국별로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실·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대략….

○ 신영규 재정팀장

- 기획조정실은 59억원 정도 됩니다. 방송정책국이 664억원, 이용자정책국이 228억원, 방송기반국이 739억원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기반국이 제일 많네요?

○ 신영규 재정팀장

- 방송기반국 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일반회계 중에 인건비가 7% 정도 증액되는데 금년에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금년에 단말기유통조사과를 포함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사업 항목 내역, 아이템은 바꾸지 못합니까? 한 번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를 못 바꿉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기재부와 협의하면 사업명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라고 했는데 예산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적은 규모인데, '방송통신 국제협력'이라고 하면 되지 '강화'는 왜 붙이냐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항목 중의 하나인데 '강화'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사이버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활동 강화' 금액도 올해와 내년이 똑같습니다. '강화'라고 하려면 국제협력사업비를 한 2배로 늘려서 가든지...

○ 신영규 재정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명칭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5페이지 증액사업 중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에 6억원이 증액되어서 1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방송 중에서 어떤 재난방송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방송은, 방송사를 통해 재난방송을 할 때 이용자가 DMB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재난방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터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DMB 중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재난 시 DMB를 활용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 지원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작년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재난방송을 강화하자고 해서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전국단위로 구축하려면 전체 비용은 수백 억 원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영규 재정팀장

- 수백 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를 들어 현재 이 정도 예산 규모로 구축한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단년도라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으셨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 설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현황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성과평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분석 보고는 내년도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설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와 관련해서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 설비가 어느 국 업무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지금 기획조정실의 정보보안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보보안팀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터널에 방송중계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상당 부분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고, 결국에는 터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에서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원활히 가져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협업체계와 관련해서 정보보안팀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미처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증액사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광고 같은 경우 'TV용 광고'와 '라디오용 광고' 2가지지요?

○ 신영규 재정팀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예산을 신청할 때 'TV용 광고'와 '라디오용 광고' 예산을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합산해서 합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현재, 편성 자체는 TV와 라디오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TV 쪽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규모를 대략 아십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지금 TV 쪽이 27억원, 라디오 쪽은 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쪽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낮은 측면이 있고, 지원 회사로 보면 TV 쪽에 55개사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라디오 쪽은 20개사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물어본 이유가 금년도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라디오 광고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서 재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예산 배정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전체 세출 1,900억원 중에 일반회계가 51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389억원이면 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상 일반 부처에서 일반회계에 비해 다른 어떤 종류의 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이한 경우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제가 모든 사례에 대해 정확히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만 통상 일반회계에 비해 기금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높은 비율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높아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닌데, 아마 우리가 거의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보면 방통발전기금이 1조 32억원인데 그중에 우리가 10% 정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부에 축적되는 것입니까? 물론 미래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방통발전기금 1조 32억원 중 우리와 미래부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내년도를 말씀 드리면, 미래부의 사업비가 약 5,500억원 정도 되고, 저희는 말씀 드린 것처럼 1,389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미래부 사업 규모가 3배 이상 큰 것으로...

○ 김재홍 상임위원

- 세출이 그렇고, 세입은...

○ 신영규 재정팀장

- 저희가 주로 수입을 걷는 부분은 방송사에 대한 분담금, 그중에서도 지상파방송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 수입원은 주파수 할당대가인데 그 비중이 높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주파수 할당대가 부분이 많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정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10% 이상 깎아야 한다면 그냥 깎고 없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둬들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물론 기금의 취지를 보면 방송·통신의 진흥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수입을 거두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더 높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기재부에서는 기금도 일반회계 예산과 동일하게 지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승인이 없으면 기금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기금에 대한 부분도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가 거둬들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면 연고권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불가피하게 깎는 것이면 이런 기금 수입에서 대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편성내역 중에서 깎아야 하는 부분을 보니까 '인터넷문화 향상', '개인정보보호' 이런 분야가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우리의 정책 중점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총액이 깎여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상 망법 개정에 따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파기가 의무화되고 나서, 올해까지는 중소기업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파기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15년도에 종료가 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줄어들어 보이는데, 사실상 전년 대비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1억원 정도 증액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료되는 것 빠면요?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인터넷문화 향상,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예산은 좀 더 살려서 중점적으로 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방송콘텐츠의 해외 수출 분야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중국 시장이 열린 것 같지만 더 어려워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방송콘텐츠 제작 부문에 말 그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운영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협의해야겠지만 여기에 비상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제작 지원 부분이 삭감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우리가 정책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반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금 더 지원 받아서, 지금 말씀 드린 인터넷 분야와 방송콘텐츠 제작 분야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영규 재정팀장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교육 부분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액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미처 증액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출한도 내에서는 줄어들어 있지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도 최소한 전년 수준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재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증액사업 모두 10개 사업에 72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키포인트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우리의 희망대로 이 이상 반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빠듯하게 심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10가지에 대해 방통위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기초실과 3개 국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3개 국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열심히 협의하고 설명하도록 맡겨 둥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그것은 아니고, 일단 기초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좀 더 반영할 것인지를 문화예산과와 결국은 협의하게 됩니다. 기초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일단 제3기 주요 정책과제들의 대표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우선순위대로 써 놓은 것입니까?

○ 신영규 재정팀장

- 꼭 그렇지는 않지만 증액한 규모를 보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은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활성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증액사업 중에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것,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말고 3개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시청자 권익보호활동 지원 사업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금액은 3개 사업이 150억원대이고,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10개 사업 중에 규모가 제일 큰데 표현을 '기타'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 이유는 증액 부분이 적어서...

○ **신영규 재정팀장**

- 증액 부분이 적어서 기타에 넣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 것 같은데, 방송기반국의 총괄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방송통신 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과거보다 더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해 보자는 의지를 담았는데,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기타로 되어 있어서..., 방송기반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과 논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반영을 조금 해 놓은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 **장봉진 방송기반총괄과장**

- 저희가 경쟁상황평가 정책을 연구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경쟁상황평가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비용 6,1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기타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이지, 사실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신영규 팀장이 이야기한 것을 들어 보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방통위의 신규 또는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 규모가 타부처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신규 내지 증액사업은, 어쩔 수 없이 아이템별로 약간씩 감액되는 것은 있어도 어느 한 아이TEM 전체를 증액 내지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신영규 재정팀장**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기재부와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 극동여수FM방송국 (2015-25-14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극동여수FM방송국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극동방송의 극동여수 FM 방송국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한다. 다만,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부과한다. 허가조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국 개국 즉시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국 개국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둘째, 청취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세부 방송편성 계획 및 제작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방송국 개국일 3월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셋째, 간접광고, 협찬 등 심의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기구, 심의절차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허가 후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넷째, 방송편성에서 기독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보도는 제외할 것, 다섯째, 기존 무선국에 혼신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여섯째,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입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재)극동방송은 해당 지역 방송국의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본사 지원을 통하여 방송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둘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반영하여 지역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법인은 (재)극동방송이고, 방송구역으로는 여수, 순천, 광양 일원과 하동, 남해, 고흥 일부가 되겠습니다. 방송국 소재지는 전남 여수시 문수동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결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구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밑에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전문가 심사평가 결과, 극동여수 FM 방송국은 총 680점을 획득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기존 방송사업자의 허가신청이라는 점에서 방송국 운영 및 기술적 능력 등은 문제없으며, 여수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방송국 설립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방송구역 커버리지 확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확대, 심의규정 준수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허가조건 부과가 필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부 기술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국 허가에 필요한 법 및 기술적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다만 혼신원인 등에 대한 적극적 해소노력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일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규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미래부의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정합니다. 다만, 신규허가이므로 허가유효기간은 전과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청취자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가조건으로는 방송구역 커버리지 확대, 제작비 투자 확대, 심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편 보도금지와 방송 주파수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 등 타 극동방송 허가시 부과한 조건은 극동여수 FM 방송국에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현금으로 운영되는 극동여수 FM 방송국의 특성을 고려해 본사 지원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청취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지역성 제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6월에 극동여수 FM 방송국 허가증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심사를 하느라 이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꼼꼼하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6>번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배점은 50점으로 되어 있고, 심사결과를 보면 25.83점을 맞아서 절반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배점은 낮지만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이 부분도 꼭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정도 점수를 맞았다면 썩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극동여수 FM 방송국이 방송발전을 위한 어떠한 지원계획을 제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자료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가지고 평가했는데, 사업자가 이 항목에 대해 제출한 자료는 방발기금 납부밖에는 없었습니다. 방송국이 작다 보니까 발전을 위한 다른 내용은 없었고, 저희가 법정으로 부과하는 방발기금 납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른 방송국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계획 하나 있는데 50%, 배점된 50점의 절반을 줄 수 있는 정도입니까? 하나만 있는데….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일단 매출액을 더 증대해서 그만큼 발전하겠다고 향후 계획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거에도 작은 방송국들을 허가할 때 보면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실현을 저희의 주된 업무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항목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자 외에도 결국 이런 사업자들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방송발전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은 방송사업자가 크든 작든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극동방송이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극동방송은 12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AM 2개, FM 10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3개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본사와의 관계가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독립된 법인은 아니고 지사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2페이지를 보면 권고사항에 '(재)극동방송은 해당 지역 방송국의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적자의 경우 본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은 해외 후원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 교단에서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후원금이 극동방송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미국 선교재단으로부터 극동방송에 매년 금액이 들어와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을 현재 승인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후원금 받는 총액을 우리가 승인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지상파방송사는 원칙적으로 외국 정부나 법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상 출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종교나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그 부분을 승인하고 있고,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업에 대해 외국인이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이 아주 많이 들어오면 그런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관련 정보는 제공하되, 보도는 제외할 것', 이것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관련 정보라는 것을 확대해석하면 여러 뉴스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유사 보도채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외국에서의 후원금 실태와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현재 기독교 정보와 관련해서 하루에 3차례 각 5분 정도 편성하여 '기독교계 뉴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청문자료에서도 보도와 관련된 것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사장이 직접 약속을 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후원금을 승인할 때 어떻게 심사합니까? 전체 액수를 심사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전체 액수에 대해서 금액은 통보를 받고 있지만, 전체 액수 대비 비율로 평가하지는 않고, 종교재단으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오고, 1982년부터 매년 승인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서면으로...

○ **김재홍 상임위원**

- 신고하는 정도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신고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의결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외국의 후원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특히 편성·편집권과 경영권이 엄정하게 분리되어 있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의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되는 방송사라면 소유는 따질 것 없겠지만 경영권과 편성·편집권이 엄격하게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승인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청취자 의견청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허가든 재허가든 방송법에 청취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그때의 '청취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5페이지 '검토의견'의 '신규허가 여부' 두 번째 꼭지를 보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라디오를 청취하는 불특정 국민을 여기에서 청취자라고 하는지, 아니면 신규허가 내지 재허가 대상인 방송국의 청취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극동여수 FM 방송국인 경우 가장 협의로 해석하면 청취자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청취 예정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청취할 예정자들을 통해...

○ **이기주 상임위원**

- 청취 예정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극동여수방송이 아직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극동여수에 대한 청취자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국을 그쪽에서 하면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청취자 의견 등을 반영해서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라고 했는데 청취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청취자 의견은...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다 좋다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그것을 알고 물어보는데, 청취자 의견이 전부 빨리 허가를 해 달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청취자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중에 뭐가 청취자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청취자 의견이라는 것은, 개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자들이 계속 주었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외국인자본 출자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SBS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 8인 (2015-25-4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자본 출자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SBS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 8인에 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14조제1항 외국인자본의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주주들에게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 제안이유는 외국인자본의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피심인은 노○○ 등 SBS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 8인을 대상으로 하며, SBS 주식을 매각한 SHIN ○○ 등 6인은 시정명령 대상사실이 소멸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년말 기준으로 노○○ 등 총 14인의 외국인 주주들이 SBS 주식 3,158주(0.01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SHIN ○○ 등 6인은 '15년에 SBS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방통위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주 주식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령 위반사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상파방송사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SBS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 이들로부터 재산상 출자를 받은 SBS는 방송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방송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외국인 주주와 해당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먼저, 외국인 주주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BS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업무정지(1억원 이하의 과징금), 광고중단,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사전통지를 송달받은 외국인 주주 5인과 주소지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송달받지 못한 3인

모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SHIN ○○ 등 6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지분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관련 사실 인지 후 즉시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SBS는 외국인 주주들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나, 상장된 방송사가 외국인들의 주식취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사에게까지 귀책사유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법 위반 원인 제공자이며, 법 위반을 시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자본 출자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SBS의 경우 법 위반의 당사자이나, 법 위반을 방지하거나 해소할 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배제하고 시정권고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SBS의 지분을 소유한 5명의 주식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가 정확한 액면가와 현재 시세에 대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경영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금액은 미미하고, 또 저희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외국인 주주를 발견했을 때, 2페이지 경과사항에 있는 대로 의결권 제한은 이미 통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내용이나 경영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사 쪽에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막을 권한과 책임도 없지 않습니까? 상장된 회사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 주주들도 연락이 안 닿네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에 방송법상 방송사의 주식을 외국인은 살 수 없다,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거기에서 막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 사전협의를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법상 한국 방송사의 주식을 살 수 없다', 거기에서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업자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경영진이 주식 소유자들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이 위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처분하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사 SBS의 경우도 연락이 닿는 주주들에게는 이미 수차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가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리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래서 저희가 시정권고라는 형식으로 SBS 쪽에 그런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번에 YTN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SBS도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외국인들이 원천적으로 한국 방송사의 주식 지분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증권거래 시스템 상에서 외국인들이 관련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SBS 주식을 사기 위해 앱이나 시스템 상에서 클릭을 했을 때 예컨대 법적인 제한 안내문을 전산 상 경고창으로 띄우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감위, 금감원, 증권사와 그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국자본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들이 상당히 오래 전에 법제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국내나 특정 나라의 거래소뿐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주로 법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적 기준으로 당연히 외국인인 경우에..., 개인이 아니고 법인도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전부 다 개인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 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거래소에 청약했을 때 '외국인은 해당 주식을 살 수 없다'는 안내도 하고, 방송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도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외국인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소규모로 매입하는 것을 방송사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가 방송법 제18조에 보면 책임을 방송사에 많이 묻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식을 샀다가 매각한 사람들은 시정명령 대상사실이 소멸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샀다가 판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재해야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도입된, 방송법 제14조 및 제18조상의 이 제도를, 아까 말씀 드린 주식시장에 있어서 국제적 거래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전통지를 다 보냈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주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지가 우리 국내에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자본시장거래법에 따르면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차별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취급을 받기 위해 등록했던 주소지나 거소지가 그 주주명부에 그대로 등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 이런 문제가 걸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등록해 놓고 출국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소불명 등이 발생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에 대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의 양에 대한 제한도 없이 무조건 1주라도 보유하면 안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그냥 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적 기준으로 외국인이, 상장된 주식이니까 잘 모르고서 증권거래소를 통해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종합편성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종합편성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PP '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가 '15년도 1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14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대상은 첫째, '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둘째, 사업계획상의 '14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 셋째, 사업계획상의 '14년도 방송프로그램 재방 비율 이행 여부, 넷째, '14년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 등입니다.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관련해서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4년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기 위해 종편PP 3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심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상의 '14년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편PP 4사의 사업계획 대비 콘텐츠 투자가 미흡합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95.1%를 이행했고, JTBC는 72.8%, 채널A는

81.3%, MBN은 95.7%로 종편4사 모두 미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상의 '14년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TV조선·채널A는 사업계획서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한 반면, JTBC·MBN은 사업계획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TV조선은 이행하였는데 -7%, JTBC는 미이행했는데 7.5%, 그다음에 채널A는 이행하였는데 -3.4%, MBN은 미이행하였는데 5.3% 추가로 더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편PP 4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른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관련해서 TV조선·채널A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치 기본방향입니다. 2014년 하반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관련해서 종편PP 3사(TV조선·JTBC·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4년 종편PP에 대한 심의조치 중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실검증 시스템의 강화, 진행자·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교육 내실화, 오보·막말·편파 방송 책임자에 대한 방송사 내부 징계 강화 및 제재기준 명확화 등 오보·막말·편파 방송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상의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여부 관련하여 TV조선·JTBC·채널A가 사업계획상의 2014년 콘텐츠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MBN이 사업계획상의 콘텐츠 투자 금액을 미이행하였으나 1개월치 실적임을 고려하여 이행촉구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상의 2014년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여부 관련해서 JTBC가 사업계획상의 2014년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MBN이 사업계획상의 재방비율을 미이행하였으나 1개월치 실적임을 고려하여 이행촉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4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이행 여부 관련하여 재승인 조건에 따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제재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로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과 관련해서 TV조선과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로서 방송법 제69조에 따라 보도,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상호 조화롭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개국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14년에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계획치를 상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종합편성채널로서 다양한 방송분야를 조화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축소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별 조치계획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에 이행촉구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7월에 시정명령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게 됩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통 10일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붙임 2>를 보면 종편 4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이렇게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조건은 권고적 의미가 아니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준 승인조건은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보고한 안건 이전에, 지난번에 논의했던 안건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입니다만 “사업계획서 불이행은 맞지만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패소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저희는 즉시 항소해서 지난해 12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 4사는 언제 변론이유서를 제출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5월 26일 현재 변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렇게 늦게 이유서를 제출한 사유를 파악하셨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그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상대방에서 재판 전략상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변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강제력을 갖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2013년도 이행실적 점검의 경우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실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행실적 점검은 적시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해서는 안 되고, 적시에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정 등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번 실적점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에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은 1년마다 점검하기로 했고, 방송의 공적책무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6개월마다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적시에 해야 하는데 2014년도 이행실적을 2015년 6월에 와서 보고하고, 여기에 나왔다고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 결국 6월말이 지납니다. 이것이 적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내용을 확실하게 좀 더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해서, 앞서 말씀 드린 투자계획이나 재방비율 등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을 점검하고, 또 반년마다 방송의 공적책무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잘 활용해서 종합편성PP 사업자들이 공적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행실적 점검에서도 종편PP들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콘텐츠 투자계획 등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즉, 채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일부 종편PP들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적시된 것입니다. 지난해 오보·막말·편파 방송 실태를 보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총 심의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TV조선은 2013년 42건에서 2014년 110건으로 2.6배 증가했고, 채널A는 30건에서 71건으로 2.3배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심의건수에서 양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8%에 달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시민단체에서는 종편에 대해서 종합편파방송이다, 막말방송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의결과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법정체재 받은 것, 행정지도 받은 것 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막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품격을 생각해서 심의에서 지적된 막말 방송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들 종편PP가 패널들을 불러서 진행하는 보도·시사프로그램을 보면 막말을 쏟아내는 인터넷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서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최소한, 품격을 갖춘 방송을 해야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방송학회 주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온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종편에서 하고 있는 ‘막말, 인신공격, 소수자 폄훼, 반인권 시사·토크 프로그램’류가 지상파 방송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어떤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잘 모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마 지상파방송인 경우는 방송사 문을 닫아야 했을지 모를 지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깊게 공감한 부분입니다. 막말·편파 방송의 증가는 제가 봤을 때 종합편성PP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채승인

심사 시 TV조선에 대해서는 종편PP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붙임>에 보면 그런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면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계획대비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13년도 24.8%에서 '14년도 47%로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널A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급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권고사항은 보도프로그램 비율을 낮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상 보도프로그램 비중은 전년대비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추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편성비율을 낮추어 가도록 하는 권고적인 사항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만약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권고사항이 있었는데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재승인 심사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하셨는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를 해야 할 책무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어찌 보면 방치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 이미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부분의 총평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편 PP 모두 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식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들이 아닌 실질적인 제어장치들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심의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기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방송의 공적책임,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제도나 기구 설치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전략 수립과 최고 경영층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이러한 총평을 고려하면 종편PP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막말·편파 방송 그리고 잦은 오보, 이러한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한 내용을 보고 2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이행실적 점검결과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종편PP 3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말...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편사가 제출한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반 의견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어떻게 보다 디테일한 측면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도 심사위원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라는 의견을 낸 것은 기억하시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바로 밑에 보면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기 위해 종편PP 3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도적 장치들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조치 기본방향을 보시면 일단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사에서 사실검증 시스템이 설치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더욱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말·편파와 관련된 부분은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진행자, 특히 출연자를 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출연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사전교육을 내실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송사 내부의 징계나 제재기준 등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실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계속 면밀히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종편PP를 승인한지 4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2010년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PP를 새롭게 승인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편성PP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의 4가지

정책목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잘 모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두 번째,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세 번째,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 마지막으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승인 심사도 하셨고 이번에 이행실적 점검도 하셨는데 이러한 당초의 종편PP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일단 이 목표가 처음에 세워진 목표라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종편들은 최초 종합편성PP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송사를 경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일부 종편의 프로그램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또 VOD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일부 종편PP는 이런 종편PP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종편PP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편PP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종편PP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PP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편PP들과 그렇지 않은 PP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적인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 드렸습디만, 4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보면 종합편성PP 정책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절반의 성과와 절반의 실패, 이런 입장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당초의 종편PP 정책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종편PP 정책에 대해 그리고 종편PP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해서 전면적으로 종합편성PP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안건을 검토하면서 특정 언론입니다만 조선일보 사설을 한 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 5일, 이때가 어떤 때이나 하면, 조선일보 창간 95주년을 맞이해서 특집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의 사설을 썼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사설의 일부입니다. “언론의 기본 사명은 정확한 사실 보도와 균형 있는 논평을 통해 독자들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머무는 공

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왜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또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중요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맡고 있다”, 국장님, 공감되십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원칙적으로 방향은….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PP의 대주주인 신문사가 쉽게 말하면 생일 날 자신들의 각오를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각오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PP에 대해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사설에서 밝힌 대로 언론의 기본 사명을 잘 수행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행실적 점검결과 그리고 개선과 관련된 조치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꼼꼼히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께서 총론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간점검을 하게 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편을 도입할 때 승인을 해주었던 심사위원회, 전부 다 외부에 맡겼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물론이고 심사위원장도 외부에 맡겼습니다. 3년이 지나서 재승인 심사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위원장을 맡았고, 전부 외부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중간점검을 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 여론의 관심과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종편PP 3사가…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이행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계획서상에….

○ 김재홍 상임위원

- 서면상 제출한 계획서를 보고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본 것이지요? 저는 이 보고안을 보면서 방송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보고자료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더군다나 점검하라는 의미는 잘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의심이 갈 경우에 새로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현장점검도 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크게 증가했다고 드러난 것이 문제인데,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이행계획서 서류,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사회자, 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사전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방송이 나와서 시청자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심지어 고발되면 거기에 대한 제작진 또는 사회자와 관계자에 대한 자체 문책, 세 번째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제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특수군이 침투해서 벌인 일이라는 방송을 내보내거나 전직 대통령이 북한 측이 내려 보낸 간첩이었다는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그 당시의 제작진, 그 당시의 사회자가 어떻게 문책이 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봤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조사해 봐야 점검이지, 그냥 자기들이 제출한 해명, 변명인지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만 보고 이행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제작진, 그 사회자, 그런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출연자, 지금 그대로 다 방송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비판과 방통위 상임위원인 저에 대한 공격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자 그대로 하고 있네?” 그 제작진 PD가 지금도 시사토론을 한다는데 무슨 공격책임·공정성 확보방안 이행입니까? 말하자면 사전모니터링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후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문책이 없었고 심의제재, 그것 해 봐야 재발방지 효과가 없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증가한 것입니다. 3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 TV조선 97건, 채널A 41건, JTBC 16건, MBN 18건이 전년도에 비해 몇 배입니까? 자기들이 지적받은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TV조선은 3배 이상, 채널A 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재승인 심사의 지적과 또 우리 점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효성 있는, 효과 있는 재승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제출한 서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훨씬 더 깊이 있게 조사하고 점검해서 보고안건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여부입니다. 이 보고안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체 조사나 점검이 아주 약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기계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JTBC의 경우..., 어느 방송사를 제가 편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자율적인 목표치에 따라 그 이행률을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JTBC는 콘텐츠 투자 목표액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사의 3배 가까이 됩니다. 1,612억 2,600만원, 그중에 이행률 이행액이 1,174억원, 그런데 72.8%만 이행했다, TV조선은 목표액이 애초에 483억원, JTBC의 몇 분의 1입니까? 그런데 이행률은 95.1%였다, 45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번 바뀌서 생각해 보시지요. 투자목표가 높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행률로 따져서 제일 떨어진다, 꼴찌였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이것은 억울한 것이지요. 물론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재승인 심사를 받았으니까 책임져라 하는 근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는 정액 목표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적절한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적절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재방비율입니다. 재방비율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편은 재방비율이 왜 높은가? 자체제작, 콘텐츠 제작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돈 들인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재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돈을 덜 들이고 싸게 만든 콘텐츠니까 재방을 하지 않았습시다. 그것 가지고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재방비율만 따져서 높다, 낮다 판단하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주제작 편성비율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종편 탄생 때 법규에도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하게 해야겠다고 방송을 많이 만든 것입니다. 채널을 많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에 종편 승인 내지는 근거에 대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편성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논란을 제일 많이 불러일으킨 종편이 과연 종편이나, 종합편성채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 프로그램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5항 <표>를 볼까요? 대체로 법규에 인정된 방송콘텐츠의 장르는 보도, 교양, 오락입니다. 그렇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상식적으로 보도, 교양, 오락으로 나누어 봤을 때에는 어느 한 장르가 1/3씩 3개로 나누어 있으니까 33%를 넘어서면 과다한 것입니다. 보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것은 조금 더 주어야 한다든가 교양을 더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은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일반 국민들은 3개의 장르로 나누어져 있으면 33%를 넘으면 과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TV조선, 자신들의 사업계획서 목표에 보도 장르의 편성비율이 47%였습니다. 너무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했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편성비율은

51%입니다.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종편이 과연 종합편성채널입니까, 보도전문채널입니까? 시청자들의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위해서 보도전문채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YTN이 있고 연합뉴스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전문채널의 보도편성이 과연 몇 퍼센트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보도전문PP에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전문PP들이 방통위 정책당국에 항의해야 하고, 종편 쪽에 항의해야 합니다. 보도전문PP의 영역을 분명히 침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널A의 보도편성 목표가 39%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4.2%를 했습니다. 이렇고도 어떻게 종합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그냥 보도PP를 운영하면서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엄정한 시정조치와 다음에 재승인 심사할 때는 더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종편의 설립 근거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는 공정방송 공적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 둘째는 제작진, 사회자, 출연자의 사전모니터링과 그것이 잘못되고 논란이 일어나면 그 결과에 대한 엄정한 자체 문책과 또 세 번째,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 하면 역시 불가피한 법적인 규정에 따른 심의제재, 이것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시정될 것이고 재발방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중간점검은 아주 약했다, 자체조사 점검이 약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공적책임, 공정성 확보 방안,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자체 문책과 사후 심의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대로 반복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시 종편의 설립근거입니다. 다양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편성을 하고 있는가? 특정 장르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전문 PP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방통위의 기본정책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 투자와 다양하고 조화로운 편성 이행여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야 다양하고 조화로운 편성이 되는 것인데, 돈을 들이는 것은 안 하고 돈이 싸게 들어가는 쪽으로만 기울어 간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2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가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점검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번 재승인 심사가 있으면 그때 강조, 무게를 두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점검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과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의 조치 기본방향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앞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재승인 조건에 종편 4사가 스스로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출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운영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고 해서 낸 것이 한편으론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누차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점검결과 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이행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에 두 분 위원님이 오래 이야기하셔서... 이 안건 제목이 정확합니다? '종합편성PP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이행실적, 무슨 이행실적입니까?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 조건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2014년도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이라는 말도..., 법적근거가 이 안건에 없습니다. 몇 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조문이라기보다는 지난번 재승인 조건에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그다음에...

○ 이기주 상임위원

- 향후 조치계획에 시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송법 제99조와 재승인 조건 딱 2개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통위에서 하는 일은 모두 현행 법 제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현행 법 제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건 제목을 막연히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하니까 많은 혼선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하면 무슨 이행실적 점검인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에 부분적으로는 반기만 한 것도 있고, 1년을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2014년도 재승인 조건..., 제가 보기에 제목은 '재승인 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이렇게 해 놓고,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재승인 조건중 이렇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려면 저는 제목부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법 제도에 따른 조치를 할 때는..., 제99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99조제1항제2호 같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거기는 단어의 문제이긴 한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치계획안에 이행촉구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이행하면 과징금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과징금까지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시정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재승인 조건에 반영되어 있는 그 비율대로 안 했을 때 그것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14년도는 이미 지났는데….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통 저희들이 콘텐츠에 대해 시정명령이 나가면 '14년도 콘텐츠 투자 미이행 금액과 '15년도에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5년 중에….

○ 이기주 상임위원

- 2015년에 추가해서 하라?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만약 나중에 시정명령을 하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재방비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방비율은 지난 부분은 어차피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15년도에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콘텐츠 같은 경우만 전년대비 못한 것을 그 다음 해까지 이월시켜서 추가로 다 하라는 취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앞에 배경이나 개요 부분에 있어서 막연히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소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해 놓고, 필요한 관련된 법적 근거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안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법적 부분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한 것, 2013년도에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대한 제재 건으로 해서 종편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지금 패소해서 소송 중이니까 또 다른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예를 들어 3년 단위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난번에 첫 번째 기간 동안 안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또 안 지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사업기간, 승인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적을 카운트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새롭게 재승인을 받았지만 과거에 시정명령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안 됩니까? 이번 사업계획서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일 승소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음 재승인 심사에는 감점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시정조치 계획에 보고된 대로 시정명령이 제재조치의 상한이라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시정명령으로 결정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넣었으면 하는 것이 승인 내지 재승인할 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재)승인 조건을 이렇게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99조, 그리고 아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놓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보고안건이니까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나중에 의결안건을 작성할 때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 드리면 실질적인 공적책무 및 공정성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을 비롯해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심의위의 지적을 받은 그런 콘텐츠를 방송하는데 책임 있는 제작진과 사회자, 이런 분들이 어떤 제재를 받았는가? 어떤 자체 문책을 받았으며, 사후심의를 방심위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는 것이지요. 방송사 자체가 문을 닫지 않으려면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문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태를 일으킨 방송인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재발방지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더 점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검이 마감시간이 있습니까? 더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점검이라는 말이 적절하냐 했는데, 지금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사무처에서 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승인 조건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라, 협조하라는 말을 하나 넣은 것은 그냥 재강조하기 위해 넣은 것이고, 방송법 제98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이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확대 적용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이 제도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까지 생각과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제도화를 먼저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종편 4사가 제출한 것들이 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확인한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내용 중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행 촉구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부 들어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검증 시스템을, 예를 들어 채널A는 사실검증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실질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서 운영을 하라는 측면에서 이행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오보·막말·편파 방송 책임자에 대한 내부 징계나 제재기준을 각 종편PP 4사가 방송의 공정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었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현재로서는 제출한 확보 방안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확보 방안을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리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을 꼭 이행하라고 나가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님, 따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조화로운 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승인 조건 중에 각 방송사 측이 보도·교양·오락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목표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치를 제출하는 것이 각 방송사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으며, 또 목표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볼 때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방송사가 '우리는 이번에 보도를 55%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근거로 그 부분에 관해 숫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도·교양·오락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편성의 자유에 따라 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TV조선에서 보시듯이 47%라는 것은 보도가 과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보도비율을 낮출 것',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물론 각 방송사업자들이 자기들이 목표한, 스스로 약속한 수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에 대해 우리가 조화로운 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법적으로는 시행령상 오락프로그램을 50% 이상 편성을 못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과거에는 보도·교양·오락에 대해 다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없어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오락프로그램 50% 그 기준밖에 없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법적 기준은 그것 밖에 없는데 어쨌든 종합편성...,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준은 있지요? 전문 편성채널의 경우에는 그 전문분야를 80% 이상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 2가지 기준만 있지, "어떻게 편성해야 이것이 종합편성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편성 방송사가 "나는 보도를 60% 정도 해야겠다, 그리고 오락을 30% 하고, 교양을 10%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은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법적으로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몇 퍼센트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승인을 할 때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60%를 제출해 왔을 때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많다, 이것은 40% 정도로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것은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강제는 안 되겠지만 짐작컨대 재승인 절차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고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편성 문제가, 물론 각 종편사들이 원래 자신들이 목표한 수치를 조금씩 오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다시 재승인 과정에서 수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재조정해서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점이 우려가 되어서, 뭔가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종합편성이라는 것이 보도는 35%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또 스포츠까지 포함해서 4가지 장르를 적정한 균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각 장르별로 35%를 넘어서는 안 된단든지 무슨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법적 미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방송정책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보도·교양·오락의 비율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있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규정이 없어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오락이 50% 초과하면 안 되고, 전문편성의 경우에는 80% 이상 하도록 하는 규정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방송분야가 조화롭게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의 추상적인 통제, 즉 재승인 심사 때 그것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과감하게 점수를 깎아서 사실상 재승인에 영향을 받을 정도까지 하는 것, 그다음에 그와 동반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러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을 때 만약에 그 권유를 안 받아들이면 바로 안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고, 또 그 권유를 받으면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시행령에, 비록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충분히 논의해 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규정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편성PP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쪽 훑어봄에 있어서 우

선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깊은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워크숍 형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부가적으로 오락 편성비율을 50%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이 2004년도에...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이 생기기 한참 전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이 생기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상파방송들에게 오락프로그램에 편중되지 마라, 쾌락 추구 쪽으로 가지 마라, 방송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라는 입법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종편이 도입됐습니다. 종편 도입의 취지는 수치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 나온, 균형 있고 다양하고 조화로운 편성을 하는 채널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기준이 보도·교양·오락 3개 영역, 3개 장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신에 비추어 3개 장르이면 33%를 넘어서면 이것은 편중이라고 봐야 한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 편성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보도·교양·오락 장르 말고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해졌습니까? 스포츠 보도, 스포츠 중계, 또 스포츠 평론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생활에서, 지금은 4개의 장르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 장르를 4개로 나누어야 한다면 각 장르별로 25%를 넘어서면 편중된 편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규정대로 하더라도 33%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평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정법주의로 꼭 가야 한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아니면 수치로 명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한다면, 역시 승인,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종편 심사위원들은 처음 도입할 때나 재승인 심사 때나 학계 인사들, 전문가들 전부 다 외부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실정법주의가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점검요구, 지적사항은 이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법에 반영하는 것입

니다. 우선 당장은 재승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심사위원들의 조건부와 권고사항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입니다. 그것을 엄정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재승인 조건과 관련해서 4개사 다 공통 재승인 조건으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또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콘텐츠 투자계획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방비율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확인해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성실히 준수하라는 의미에 대해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100% 이행하는 것이 바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종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실적과 관련해서 해당 퍼센티지에 미달했을 때는 비록 그 미달된 부분이 아주 적더라도 시정명령을 했던 전례가 있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있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역방송 제작비 투자 부분에 대해 '14년 7월에, 저희들이 원래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4%를 제작비에 투자하도록 하는데 작년에 KNN은 13.7% 정도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97% 정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성실히 준수하고'는 그것을 완전하게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95%를 이행한 것과 72%를 이행한 것에 대해 같은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미이행 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이행 분이 적은 방송사의 경우에는 올해 추가로 이행해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신 미이행 분이 많으면 올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겉으로 보서는 같은 시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편의 편성과 관련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편성이 어떠한 편성이나? 법적으로 장르별로 편성비율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정비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입니다. 보도·교양·오락이 있다고 할 때 보도가 50%를 차지하고, 교양과 오락이 각각 25%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균형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조화라는 것은 ‘구성요소 간에 서로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보도·교양·오락이 있는데 어느 특정 장르가 과도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조화로운 편성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를 심사할 때 그 평가기준들을 보면 대부분 비계량 평가입니다. 즉, 심사위원들이 볼 때 보도 장르가 과도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편성이다, 그래서 균형 있게 조화롭게 편성하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화롭고 균형 있는 편성, 그 조화와 균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잘 감안해서 앞으로 관련된 법제를 정비할 때는 그러한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면 방송법 제69조제2항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 이것이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69조제2항·제3항 규정을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그밖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등을, 우리 사무처만의 생각을 모을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모으면서, 또 저희와 수시로 논의하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

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 근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수정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8. 기 타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6월 11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40분 폐회 】